

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4. 5. 2 선고 2024가단224 판결 [건물명도 등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4. 5. 2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

가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,

나. 2024. 3. 1.부터 위 가. 항 기재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1,040,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,

다. 6,842,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. 3. 8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 판결 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 이숙미

별지